

朝鮮 後期小作 形態의 地域的·差異에 關한 研究*

金 基 赫*

본 연구는 조선 후기의 소작 형태의 지리적인 차이가 농업지역의 특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조선후기의 소작 형태는 크게 ① 도지법(租·種子 소작인 부담), ② 병작법(租·種子 지주 부담) ③ 병작법(租·種子 절반씩 부담) 등 3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도지법은 미작 위주의 농업지역, 병작법은 맥류의 특화도가 미작보다 높은 지역에서 주로 분포한다. 특히 병작법으로 租·種자를 소작인이 부담함으로써 소유권이 강화된 형태인 소작형태의 분포는 더욱 그러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지주의 소유권 발달은 토지 생산성의 향상과는 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들 지역에서 답에서 소유권이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로 이모작의 논에서 冬作物을 대개가 소작인이 소유함으로써 실질지대는 1/3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조선 후기의 이모작은 농지의 경작권의 강화를 가져오면서, 답에 대한 소작권 점유의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지주들로서는 실질지대(1/3)를 유지하기 위해 夏作에서 지주의 소유권이 강화되는 소작형태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主要語 : 소작, 병작, 농업지대, 토지지대, 이모작

1. 서 론

1) 연구목적

토지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는 메카니즘인 토지 제도는 생산물을 분배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일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사회 체계 유지와 안정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Bunce, 1982, 37). 따라서 토지 제도는 생산 방법에 의해 결정되면서, 사회의 변화와 함께 그 형태가 변화한다. 소유권은 생산물에 대한 권리의 행사권을 의미하며, 토지 생산력의 변화는 소유권의 형태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Altman, 1980, 124).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토지를 사용, 처분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소유권은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가장 잘 나타난다. 이때

지대는 경작자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공물이며, 소작인은 토지 자본에 대해 관행, 혹은 자본주의 법칙 등에 따라 이자를 산정하여 소작료를 지불한다. 따라서 토지이용의 결과로 창출된 경제지대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배분되는 과정에서 이 소작 형태에 의하여 어느 부분이 경작자에게 귀속되며 어느 부분이 소유자에게 귀속되는가가 결정된다. 경작권이 소작인에게 이전되고 나면 소유권은 그 자체로 생산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분배적으로만 작용한다(鄭東鎬, 1982, 236). 즉 지주는 소작인이 발생시킨 농업생산에서의 이윤을 직접적인 노동의 참여없이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소작인으로부터 지불되는 노동력, 현금, 현물 등에 의해 지주는 농지의 구입, 개간 등 새로운 농지 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농지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자본 축적의 원천이 된다.

* 이 논문은 199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

국가 경제가 농업을 근간으로 하였을 때 소작의 형태는 사회 성격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대상 시대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조선시대 소작의 연구는 그의 봉건적인 성격, 일제시대에는 식민지적 성격, 해방 이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도시 자본주의 진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다. 소작 형태가 시대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하였음은 '소작' 용어의 다양함이 반증한다.¹⁾ 시대적으로 소작 형태의 차이가 있음은, 동시에 이의 지리적인 다양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농업의 형태는 오히려 공간적으로 더욱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후와 지형 조건 등 자연환경에 의하여 지역 분화가 이루어졌던 조선 초기의 농업은 후기에 들어 水田의 확대, 이앙법 등 농업 기술의 발전 등으로 새로운 지역 분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소작 형태에 영향을 주어 남쪽에서는 半收制, 북방에서는 並作制로 분화되었음이 기존의 자료에서 밝혀지고 있다.²⁾ 일제시대에는 한반도가 일본의 식량 생산기지로 되어 농산물을 수탈당하면서 농업 지역구조는 식민지적 성격이 강화되었고, 이에 미작과 면작 재배지역이 지리적인 특화를 이루면서 지역분화를 주도하므로써 향만 도시들이 성장하였다(金基赫, 1994). 이에 따라 조선시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소작 관행은 토지조사사업 이후 계약 관계로 변화되면서, 경직성을 나타내기도 하였고, 지역에 따라 형태가 분화되었음은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慎鏞廈, 1966). 해방 이후 농지 개혁사업으로 소작은 은폐된 형태로 존재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 도시자본주의의 전개로 농업 지역구조는 대도시를 축으로 재편되었고, 소작 형태도 다양성을 띠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李佑宰, 1974). 1980년대 이후 소작은 '賃貸借'라는 용어로 합법화되었다.

이와 같이 소작의 형태가 시·공간적으로 농업 형태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면서 나타남을 볼 때, 소작을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작 형태와 농업 형태간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 특히 조선시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소작에 대해 체계적

으로 정리된 자료의 구득이 어려운 점에도 기인하나, 소작 형태를 설명함에 있어서 생산물의 분배 방법에 따른 사회 성격의 규명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농업지역의 구조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소작관계를 농업지역과 관련하여 분석하고자 한 시도는 아직 나타나고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후기의 농업 공간하에서 소작 형태가 어떻게 지리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농업 지역의 특성과는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었는가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研究方法 및 資料

소작 형태의 지리적인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먼저 소작형태의 분포를 확인한 후, 농업 지대를 도출하고, 소작 형태와 농업지대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소작 형태에 대한 자료로 당시의 소작 내용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韓國土地農産 調査報告』(1904)를 사용하여, 畓(90개군)과 田(55개군)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군별로 자료를 정리한 결과 소작 형태는 ① 畓에서의 소작료 결정방법, ② 田에서 소작료 결정방법, ③ 地租·種子 분담 방법, ④ 부산물인 糞(똥) 분배, ⑤ 기타, 농경지 파손시 복구비 부담 방법, 이모작에서 冬麥作의 분배 방법, 인삼 등 특작목에서의 소작료 결정 방법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결정되고 있었다.

소작 형태의 지리적인 분포는 소작료 결정방법 및 地租·種子 부담방법을 지표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한편 자료 중 소작료 결정 방법에 대한 기록에서 절반법, 도지법, 병작법, 정액법, 삼분법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1권(경기도, 충청도, 강원도편)에서는 절반법과 도지법이 있고 병작법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2권(경상도, 전라도편)에서는 병작법과 도지법이 나타나나 절반법은 없다. 동일한 형태인 병작법과 절반법을 상이한 용어로 기록된 것으로 판단되어, 절반법을 병작법으로 포함시켜 분석하였다.³⁾

지리적인 분포의 확인 후 농업 지역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수전비율, 이모작 등 경영

형태의 지리적인 분포를 확인한 후⁴⁾ 농업 지대를 도출하였다. 자료는 일제에 의해 발행된 『朝鮮總督府 統計年報』를 사용하였다. 당시에 발행된 통계연보 중 군현별 농업통계가 수록되어 있는 것은 1909년부터 1912년까지의 통계이다. 그러나 1912년 이외의 자료는 누락분이 많으며 체계적이지 못하여 본 분석에서는 이 연도의 것을 이용하였다. 발행 시기가 조선 후기의 농업 성격이 큰 변화없이 유지되었던 시기이므로, 분석 결과는 조선시대의 농업 지역구조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지대는 작물의 재배 면적을 이용,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되었다.⁵⁾

농업지대 추출 후 소작의 구성 요소를 이용하여 각 지역의 농업 특성과 소작의 형태를 파악하였고, 이 후 교차표를 이용 소작 요소들과 농업지대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각 농업지역에서 소작형태가 지리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료는 주자료 외에 『朝鮮ノ小作慣習』(1932), 『韓國農業經營論』(1904), 『韓國農業視察復命書』(1907), 『朝鮮王朝實錄』CD-ROM, 『牧民心書』 등을 통해 보완하였다.

2. 소작 형태의 지리적 전개

1) 소작의 전개

조선 전기의 소작형태는 병작제가 일반적이었으나 그의 내용은 並作半收라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다. 왕조 실록에서도 '소작', '병작'용어가 나오나 병작에 대해서만 '時俗에 밭을 남에게 주어 경작시키고 소출을 함께 나누는 것(문종 1년 11월 戊午)'이라는 설명외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朝鮮王朝實錄 CD-ROM). 이 병작반수는 소출을 반분하되 조세, 종자는 지주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소출의 절반이 명목지대이고 種·租稅를 제외한 나머지가 실질지대였다(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9, 63).

조선 후기의 자료에서 보면 李翼의 星湖塞說 本政編에는 「納租와 貯種은 지주의 소관이고 작인은 이에 간여하지 않는 것이 舊俗이나, 최근에는 湖西, 湖南에서 차차 작인이 내고 전주가 간여하지

않는다」라는 기록이 있고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도 「북방에서는 종자와 세미를 지주가 내는데 남방에서는 작인이 낸다」고 하여 地租, 種子 등의 부담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자료에서 나타난 지리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소작인의 농간을 막기 위한 이유 때문이라는 견해와 함께 남부지역에서의 생산성 증가에 따른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과잉 농업 노동력으로 소작지의 경쟁으로 인해 지조, 종자를 소작인이 부담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 같은 소작 형태의 지리적인 분화는 조선 후기에 이양법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급속히 보급되면서 새로운 소유관계로 지역 분화가 이루어져, 남쪽에서는 半收制, 북방에서는 並作制가 행해졌다. 이는 일제 중기의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朝鮮總督府, 1932).

조선 말기의 소작료 결정방법은 자료에서 2가지 혹은 3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의 1권(경기도·충청도·전라도편)에서는,

「소작료 징수에는 打作과 賭地가 있다. 타작법은 매년 수확고를 검사하여 미리 협정한 비율에 의하여 수확물을 분할하는 것으로 그율은 1/2 또는 1/3 등이 있으나 통상 1/2로 한다. 畜地에 조금 행해짐을 보는 賭地法이란 미리 소작료를 협정하여 두는 것으로서 每年 흉풍에 의하여 소작료를 증감하는 일이 없다. 밭에 대하여 가장 많이 행해진다. 前者에 비하면 타작하는 번잡이 없기 때문에 經理院 내지 官家 所屬의 토지는 대개 이 법을 사용한다」

라 하여 2가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동 자료 2권(경상도·전라도 편)에서는,

「① 賭地(三分法) : 수확고의 1/3을 지주가 징수하고 조세, 종자, 경작비 등은 모두 소작인이 부담한다(물론 변형된 방법도 있다). ② 並作(여우리) 또는 打作(折半法) : 종자와 조세를 지주와 소작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수확고(穀과 糞)를 절반씩 부담한다(물론 변형된 방법도 있다). ③ 定額法 : 소작료를 豐凶에 불구하고 일정으로 한다. 실제 널리 행해지는 것은 분익법(分益法 즉 1과 2이다)이다.⁶⁾

라 하여 3가지를 들고 있다. 한편 『韓國農業視察

復命書」(1907)에는,

「한국에 있어서 소작 즉 借地權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순전히 토지를 입차하는 것으로 賭地라고 하며 또 하나는 이익을 分益하는 것으로 打作法이라고 한다. 賭地는 수확의 豐凶에 관계 없이 일정한 소작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소작료는 종래 수확고를 기준으로 하여 지주와 소작인이 상호 협정하여 제약하더라도 대개 토지 수확의 1/3을 지주가 가져가며 보통 租稅와 種子, 肥料 등은 소작인이 부담하여 소작인이 소작료로 농산물을 지주가 지정한 장소에 가져다 줄 의무를 지닌다. 흥작인 경우 소작인이 소작료를 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고 하였다.

이와 같이 당시 소작형태는 조선 전기와는 달리 賭地制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었고, 병작제는 전통적인 방법(地租, 種子 지주 부담)과 소유권이 강화된(地租, 種子 소작인 부담) 半收制도 있었음이 기존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이 도지제의 기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주계급의 개간 간척에서 참여했던 농민들의 노동력 제공 댓가라는 견해(許宗浩, 1965)와, 경영형 부농의 확대에 따라 반수제가 변화한 결과라는 견해 등이 있으며(金容燮, 1970), 인구 증가에 의한 소작지 경쟁의 결과라는 주장(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9) 등이 있다.

이상, 연구 자료와 기존의 조선시대 소작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조선 후기 소작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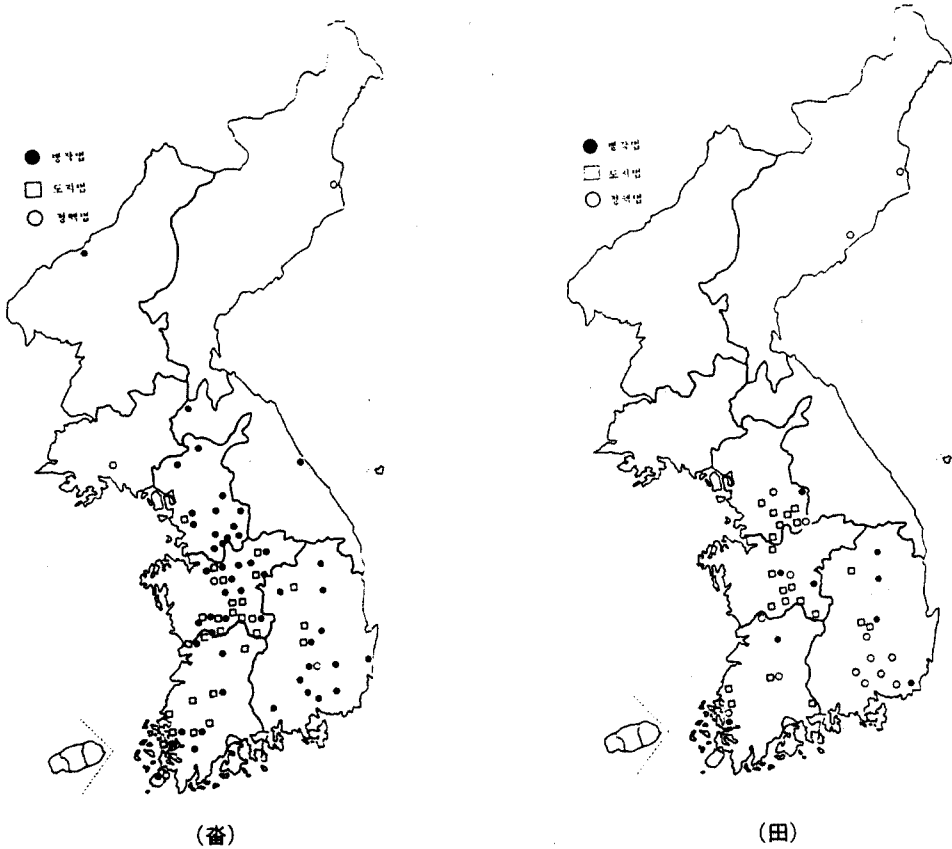


그림 1. 소작료 결정방법의 분포

결정방법은 병작법, 도지법, 정액법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소작 지대는 1/2 혹은 1/3로 되고 있으나 그 차이는 地租·種子를 누가 부담하는냐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는 소작료 결정방법과 地租·種子 부담 방법의 분포를 확인함으로써 소작 형태의 지리적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소작 형태의 지리적 분포

밭과 田에서의 소작료 결정방법의 지리적인 분포는 <그림 1>과 같다. 답의 경우 전체 90개군 중 병작법은 55개군(61.1%), 도지법은 29개군(32.2%), 정액법 6개군(6.7%)이다. 분포를 보면 병작법의 경우 경기도의 과천, 광주 등 11개군, 충청도의 괴산, 보은 등 16개군, 전라도의 경우 군산, 나주 등 9개군 경상도는 김해, 대구 등 14개군과, 이외에 강원도의 양양, 이천군, 평안도의 벽동군에 분포하여 산간 내륙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나타나고 있다.

도지법은 경기도 시흥, 충청도 강경, 괴산 등 15개군, 전라도 광양, 광주 등 9개군, 경상도는 용궁, 인동, 현풍군, 함경도 원산에 분포하여 병작법의 분포와는 달리 경상도에는 미약하게 분포하고 충청도 및 전라도 해안 지방에 주로 분포한다. 정액법은 충청도 천안, 전라도 진도, 경상도 창녕, 현풍군, 함경도 길주군, 황해도 재령군에 분포한다. 이의 도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경기도와 경상도는 병작법이 각각 13개군(23.6%), 14개군(25.

밭에서는 도지법이 22개군(47.8%), 병작법이 9개군(19.6%), 정액법이 15개군(32.6%)에서 나타난다. 분포에서는(그림 1) 도지법이 경기도 안성, 지평 등 8개군, 충청도의 노성, 문의 등 8개군, 전라도의 광양, 무안 등 4개군, 경상도의 왜관, 용궁 등 7개군에서 나타나 주로 충청도와 경기도 내륙지역에 분포한다. 병작법은 충청도의 보은, 연기군, 전라도의 목포와 전주와 경상도 내륙지역에 부분적으로 분포한다. 정액법은 경기도의 광주, 음죽군, 충청도의 석성, 청주, 충주군과 전라도의 순창, 경상도의 밀양, 영산 등 6개군, 함경도의 길주, 북청군으로 주로 경상도 남부와 함경도 해안지역에 분포한다.

밭에서의 地租 및 種子의 부담 방법에 대해서는 지주나 소작인이 지조·종자 둘다 부담하는 경우, 둘다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 지주나 종자 중 한쪽만 부담하는 경우, 地租는 소작인이 부담하고 종자를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다. 地租에 있어서는 전체 67개군 중 소작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23개군(34.3%),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13개군(19.4%), 지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31개군(46.3%)이다. 종자는 소작인이 부담하는 경우 31개군(46.3%), 절반씩 부담이 12개군(17.9%), 지주 부담이 24개군(35.8%)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는 ① 地租·種子 전부를 모두 지주가 부담하는 경우(20개군, 29.4%), ② 地租·種子 모두를 소작인이 부담하는 경우(27개군, 39.7%), ③ 地租·種子를 서로 분담하는 경우(21개군, 30.

표 1. 도별 소작료 결정 방법

구분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계
도지법	-	1(3.4)	3(10.3)	9(31.0)	15(51.7)	-	1(3.4)	-	29(100.0)
병작법	2(3.6)	13(23.6)	14(25.5)	9(16.4)	16(29.1)	1(1.8)	-	-	55(100.0)
정액법	-	-	2(33.3)	1(16.7)	1(16.7)	-	1(16.7)	1(16.7)	6(100.0)

Chi-Square=36.8209 Df=14 Sig=0.00079

5%)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전라도, 충청도, 전라도는 도지법이 병작법보다 우세하게 분포하고 있어 도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9%)로 유형화하였다.

이의 분포는 <그림 2>와 같다. 地租·種子(이하 '租·種子'라 함)를 지주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는



그림 2. 租·種子 부담 방법의 분포

경기도 과천, 광주 등 6개군에, 전라도에는 군산, 목포, 순창군, 충청도는 괴산, 보은 등 8개군과 평안도의 벽동에 나타나 주로 경기도와 충청도 내륙 지역에 분포한다. 租·種子를 소작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충청도 석성군, 경상도 마산, 상주 등 7개군, 전라도 광양, 광주 등의 10개군과 함께 충청도 강경, 노성, 은진군에 나타나 전라도 해안지역과 경상도 낙동강 유역에 분포한다. 租·種子를 지주와 소작인이 나누어 분담하는 경우는 강원도 양양군, 경기도 연천, 용인, 음죽군과 경상도 김해, 대구 등 12개군, 전라도에는 군산, 나주 등 6개

군, 충청도에는 부여, 신창 등 5개군으로 경상도와 전라도 남부 지역 및 충청도 해안 지역에 분포한다.

한편 부산물인 벼짚의 소유방법에 대해서는 39개군 중 소작인이 소유하는 경우가 22개군(56.4%), 절반씩 나누는 경우는 9개군(23.1%), 지주가 가져가는 경우는 8개군(20.5%)에 분포한다. 전라도 진도의 경우에는 地租 부담자가 벼짚을 가져간다.

3. 농업지대에서의 소작 형태

본 장에서는 수전비율, 이모작 등 경영 형태의 지리적인 분포를 확인한 후 농업 지대를 도출하여, 각 지역의 소작 형태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1) 농업지역구조

(1) 경영형태의 지리적 분포

답비율의 분포는 <그림 3>과 같다. 80% 이상의 군은 경기도의 교동군, 충청도 석성, 한산군, 경상도의 곤남, 하동군, 전라도의 옥구, 용안군 등 28개 군현으로 나타나 전라도 일대 지역, 금강, 하구 지역, 안성천 및 한강 하구지역에 분포한다. 70%~80%인 지역은 경기도의 이천 등 6개군, 충청도의 이산 등 20개 군으로 나타나며 전라도와 강원도의 일부이다. 60%~70%인 지역은 경상도 남부지역과 전라도의 남부, 경기도 및 황해도의 일부지역에 분포한다. 답비율이 조선 후기에 비해 지리적으로 확대된 것은 자료의 발행시기가 토지조사사업 기간 중인 이유도 있겠지만 조선 후기에 수전의 확장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二毛作의 분포는 <그림 4>와 같다. 畚에서 糞을 재배하는 면적의 비율이 40%이상인 15개군 중 경상도가 의흥, 의성군 등 13개 군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라도에는 순천군, 충청도에는 회인군만이 나타날 뿐이다. 20%~40%인 군은 35개로 그 중 충청도의 황간, 단양, 문의, 홍산 등 4개 군현과 전라도의 고산, 구례 등 6개 군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군현이 경상도 지역에 분포하며, 충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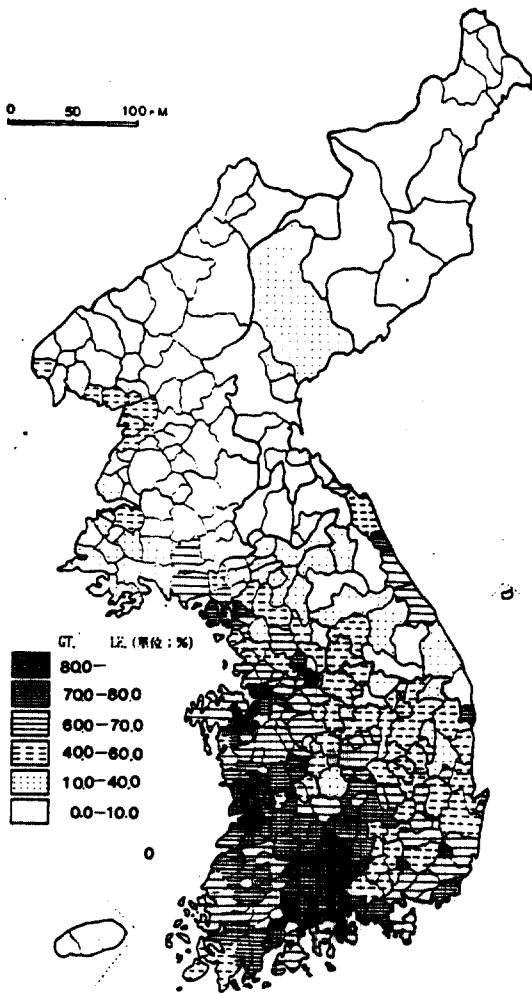


그림 3. 답비율의 분포(출처: 김기혁,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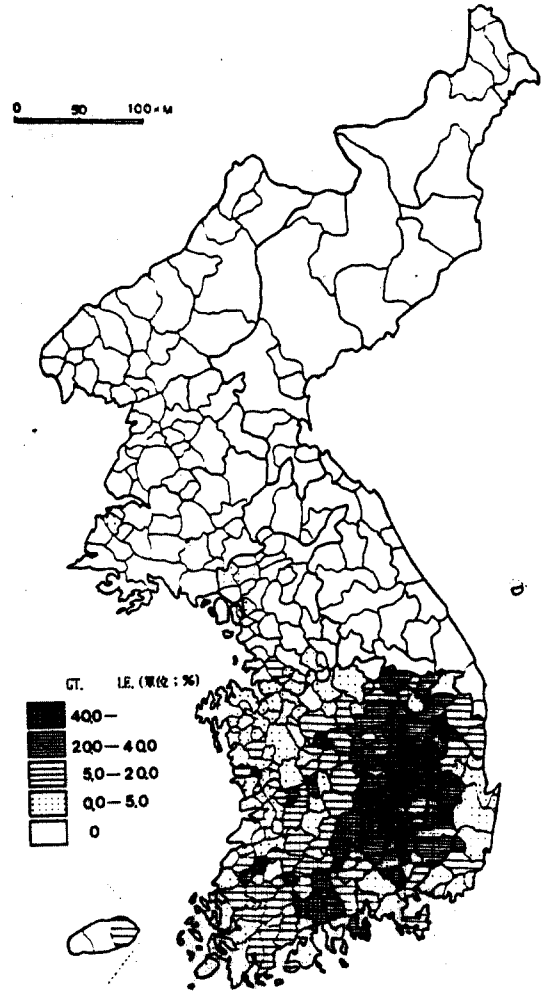


그림 4. 이모작 비율의 분포(출처: 김기혁, 1991)

도와 경상도 이북 지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二毛作이 경상도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同 緯度上인 전라도에서 미약하게 분포하는 것은 이 농업이 경상도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었음을 암시한다. 이는 二毛作을 설명한 史料에서도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柳重林은 「남쪽 지방의 농민이 水田에 가을보리를 심어 수확하고 이후 물을 대어 이앙을 하여 1년에 두번 심음으로써 功省利가 매우 크다」《增補山林經濟 15, 四時纂要》라고 하여 삼남지방에서 二毛作의 득을 설

명하고 있으며, 韓致喆은 水陸兼種 문제를 논하면서 「嶺南田多膏沃 春則 種麥 夏則灌水 種稻」라는 기록과 五洲가 우리나라의 麥農을 말하면서 「영남 지방의 인구가 麥을 중국 中原지방에서와 같이 常食하고 있다」는 기록은 麥農法이 경상도를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柳鎮穆의 疏文 일부 중 「窮夏農耕으로서 보리보다 긴한 것이 없는데 평야의 농민이 畚이 많고 田이 적어 많이 심을 수 없다」『日省錄, 正祖 23, 2月11日』는 내용은 전라도 지역과 경상도 지

朝鮮 後期 小作 形態의 地域의 差異에 關한 研究

역이 서로 다른 분포를 나타내게 한 이유를 설명하며 준다. 즉, 경상도 지역은 낙동강과 지류의 하천분지의 평야지역을 제외한 山麓의 田은 조선후기 대부분 水田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柳鐵穆의 지적에서처럼 畚이 많고 田이 적은 지역에서 麥類를 생산하기 위한 공간은 畚일 수 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조건이 경상도에서 二毛作을 먼저 발전시킨 계기가 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전라도 지역은 경상도와 유사한 기후적인 조건을 지니고 있으나, 답면적이 경상도에 비해 넓으며 또한 소구릉지상에 田이 충분히 발달되어, 二毛作을 하지 않더라

도 충분한 麥類의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二毛作의 수용이 늦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移秧法에 뒤이어 나타난 二毛作은 결국 경상도에서 농민들에 의해 먼저 전개되어 토지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자영농적인 성격이 강화되었고, 지주들의 간척을 통한 대규모 농경지 조성이 용이한 전라도에서는 二毛作이 후에 전파되면서 토지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에 농업의 地主의인 성격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二毛作의 전개에 의해 생산물의 분배 형태도 지역간 분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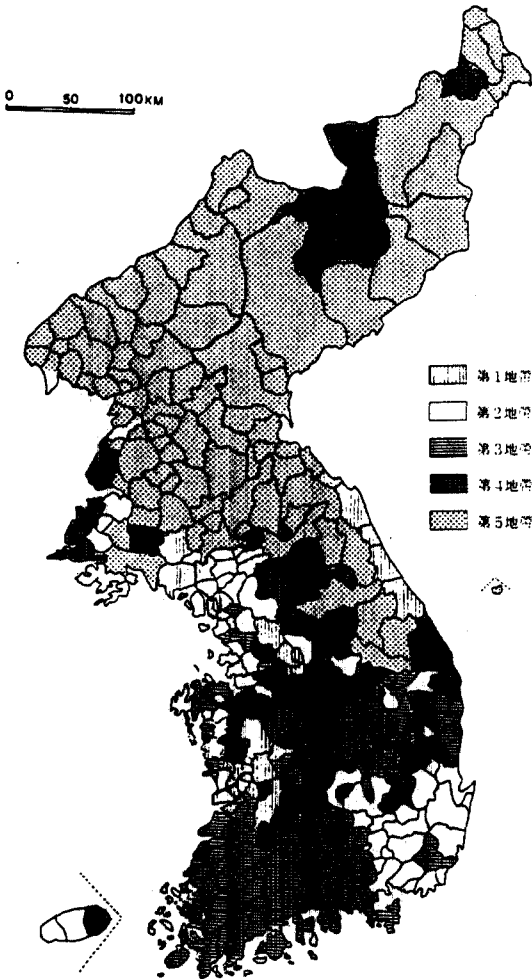


그림 5. 농업지대의 분포

2) 농업지대

지대 추출을 위해 분석 대상이 된 작물은 다음과 같다(()안은 전국 재배면적(町)).

- 米(980,443) 麥(584,643) 豆(553,077)
- 粟(403,444) 稷(88,312) 黍(14,139)
- 蜀黍(54,087) 玉蜀黍(54,135) 燕麥(42,408)
- 蕎麥(45,854) 綿(51,710) 大麻(15,124)
- 苧麻(1,198) 煙草(17,884) 荏(10,203)
- 莞草(1,937)

작물 분류에 있어서 자료상에는 米, 麥, 豆, 雜穀, 特用 등의 5개 작물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재배면적을 기초로 하여 米, 麥, 豆, 粟, 雜穀(稷, 黍, 蜀黍, 玉蜀黍, 燕麥, 蕎麥), 纖維(綿, 大麻, 苧麻), 特用(煙草, 荏, 莞草) 등의 7개 작물군으로 분류하였다. 작물군별 재배면적을 이용하여 입지계수를 계산한 후, 이의 군별 순위를 산출하였고, 이 순위를 이용 군집분석을 시도하였다. 군집은 324에서 325단계로 넘어갈 때 군집별 거리 증가량이 급격히 증가하여(전체 329개 군) 5개 지대가 추출되었다. 각 지대의 지리적 분포는 <그림 5>와 같으며 작물 특화도의 평균 순위는 <표 2>와 같다.

2) 각 지대의 소작 형태

(1) 제1지대

제1지대(47개군)에는 강원도의 간성, 강릉 등

표 2. 농업 지대별 작물 특화도의 평균 순위

지대	분포 지역	米	麥	豆	粟	雜穀	纖維	特用
제1지대 (47)	경기도, 충청도 해안, 강원도 해안	47.5	235.1	207.5	239.4	194.2	278.6	189.9
제2지대 (43)	경기도 평야 경상도 남부, 제주도	188.9	72.5	111.6	195.7	221.4	218.4	229.0
제3지대 (88)	전남지역 경상도 북부	104.4	130.1	237.4	225.5	238.1	102.2	204.1
제4지대 (69)	충청도 내륙지역	182.3	107.0	175.7	150.9	152.5	139.3	68.7
제5지대 (82)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내륙	270.3	259.4	81.9	53.1	50.8	161.0	156.0

* 진하게 표시된 곳은 특화도가 평균 순위(165위) 이상인 작물군임.

표 3. 제1지대의 소작 형태

	地 域	決定方法	租·種子	벼짚	地 域	決定方法	租·種子	벼짚
畜	충청도 강경	도지법	소작인		충청도 임천	병작법	분담	소작인
	충청도 연산	도지법			충청도 연산	병작법	분담	절반
	충청도 직산	도지법			충청도 한산	병작법	분담	소작인
	충청도 임천	도지법			강원도 양양	병작법	분담	소작인
	충청도 석성	도지법	소작인		전라도 전주	병작법	분담	지주
	충청도 노성	도지법	소작인		경기도 음죽	병작법	분담	
	충청도 은진	도지법	소작인		전라도 군산	병작법	지주	지주
	전라도 군산	도지법	소작인		경기도 음죽	병작법	지주	지주
	경기도 이천	병작법		절반	충청도 직산	병작법	지주	지주
	경기도 광주	병작법	지주		경기도 죽산	병작법	지주	절반
	전라도 군산	병작법	분담					
	田	충청도 은진	도지법	소작인		충청도 직산	도지법	
충청도 노성		도지법	소작인		전라도 전주	병작법	분담	
경기도 음죽		도지법			충청도 석성	정액법	소작인	
경기도 이천		도지법			경기도 광주	정액법	소작인	
경기도 풍덕		도지법			경기도 음죽	정액법		
경기도 죽산		도지법						

5개군, 경기도의 개성, 광주 등 15개군, 전라도의 군산, 만경 등 7개군, 충청도의 공주, 노성 등 17개군, 평안도의 숙천군, 황해도의 백천, 연안군 등으로 주로 경기도 및 충청도 해안과 강원도 해안 지역에 분포한다. 미작이 지역화를 주도한다. 이는

조선후기에 나타난 이 지대에서의 수전 확장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답의 비율이 높는데 반하여 맥류의 순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이모작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섬유작물의 특화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다.

朝鮮 後期 小作 形態의 地域의 差異에 關한 研究

이 지대에 속한 군의 소작 형태는 <표 3>과 같다. 답의 경우 21개군 중 병작법이 높게 나타나나 (13개군, 61.9%), 도지법도 8개군(38.1%)으로 적지 않아, 두 형태가 혼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租·種子의 부담도 지주와 소작인 부담이 각각 5개군씩 동일하고, 같이 분담하는 경우가 7개군에 나타나고 있어, 벧집 처리와 소작료 결정 방법과 함께 뚜렷한 유형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병작법에서 租·種자를 지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5개 군, 분담하는 경우가 7개군이 나타난다. 지주가 租·種자를 부담하는 경우는 벧집은 지주가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租·種자를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는 벧집을 지주, 혹은 소작인이 가져가며 절반씩 나누는 경우도 있다. 도지법에 있어서 租·種자는 전부 소작인이 부담한다.

소작료는 1斗落에 10斗(충청도 석성), 혹은 15斗(충청도 임천)를 납부하며 흉·풍에 따라 감면해 주기도 한다. 수해를 입었을 경우 비용이 수입의 1/3 이상이면 그 중 절반은 지주가 부담하는 경우(강경), 경지 복구시 소작인은 소와 노동력을 제공하고 지주는 재료와 노동력, 음식을 부담하는 경우(경기도 광주, 음죽)가 나타나고 전액 지주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경기도 죽산). 田의 경우 11개군 중 7개군에서 도지법이 나타나며 3개군은 정액법이다. 租·種자는 대개 소작인이 부담한다. 소작료는 1斗落 혹은 一日耕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인삼밭 소작료는 5할 증액하여 받기도 한다(경기도 풍덕). 전라도 전주에서는 병작법에서 租·種자를 절반씩 부담한다.

(2) 제2지대

제2지대(43개군)는 경기도의 강화, 마전 등 9개군, 경상도의 경산, 경주 등 25개군, 전라도의 대정, 제주군, 충청도의 연풍, 제천, 태안군, 황해도의 금천, 송화 등의 4개군으로 경상도 남부지역, 경기도 평야지역 및 제주도 일부에 분포한다. 미작이 평균으로 나타나나 맥류와 두류가 특화되어 있다. 잡곡과 특용작물의 특화 순위도는 매우 낮다. 이 지대에서 속한 군의 소작형태는 <표 4>와 같다.

畓에 있어서 13개군 중 병작법(9개군)이 매우 우세하다. 도지법이 1개군(경상도 현풍), 정액법이 2개군이다. 병작법에 있어서 租·種子 부담은 경상도 마산을 제외하고는 지주가 부담하거나 절반씩 분담하고 있어 정액법에서 租·種자를 소작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경상도 마산의 경우 소작인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병작법에서 벧집은 전부 소작인 소유이다. 이 지역의 경우 동맥작의 처리가 나타나는 것이 특이하다. 동맥작을 소작인의 소득으로 하는 경우(경상도 창녕, 울산, 왜관)와 맥작을 절반으로 하여 여름 작물에 포함시켜 소작료를 산출하는 경우(경상도 부산)가 있다. 田의 경우 7개군 중 5개군에서 정액법이 나

표 4. 제 2지대의 소작 형태

	地 域	決定方法	租·種子	벧집	地 域	決定方法	租·種子	벧집
畓	경상도 현풍	도지법	분담		경상도 마산	병작법	소작인	소작인
	경상도 창녕	병작법	분담	소작인	경기도 연천	병작법	분담	소작인
	경상도 밀양	병작법	분담		경기도 장단	병작법	지주	소작인
	경상도 김해	병작법	분담	소작인	경상도 현풍	정액법	소작인	
	경상도 울산	병작법	분담		경상도 창녕	정액법	소작인	
	경상도 왜관	병작법	분담		경상도 현풍	정액법	소작인	
	경상도 부산	병작법	분담					
	地 域	決定方法	租·種子		地 域	決定方法	租·種子	
田	경상도 왜관	도지법	소작인		경상도 현풍	정액법		
	경상도 부산	병작법	분담		경상도 연산	정액법		
	경상도 김해	정액법			경상도 창녕	정액법		
	경상도 밀양	정액법						

타난다. 경상도 부산에서는 병작법하에서 租·種子를 절반씩 부담한다. 소작료는 1斗落에 麥 3-4斗이며, 창녕에서는 홍수로 경지가 유실될 경우 소작료를 감면해 주기도 한다.

이 지대가 병작법에서 租·種子를 지주와 소작인이 부담함으로써 畓에서 경작권보다는 소유권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이모작에 따른 동작물은 처리방법이 언급되고, 또한 동작물의 대부분은 소작인 소유로 되는 것으로 보아, 소유권의 강화는 夏作物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제3지대

제3지대(88개군)는 강원도의 평해군, 경기도의 고양, 시흥 등 4개군, 경상도의 개령, 거제 등 33개군, 전라도의 강진, 고부 등 38개군, 충청도의

결성, 남포 등 11개군 등으로 전라도 남부지역, 경상도 북부지역과 충청도 일부에 분포한다. 미작, 맥류 및 섬유작물에 의해 지역화가 주도되고 있다. 미작과 함께 맥류가 동시에 특화되어 있음은 이 지역에서 이모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임을 보여준다. 섬유 작물이 특화된 것은 면화 재배 때문이다.

이 지대에 속한 군의 소작형태는 <표 5>와 같다. 畓에서 도지법이 12개군, 병작법이 14개군, 정액법이 1개군으로 나타나 도지법과 병작법이 혼재되어 있다. 도지법에서 租·種子는 전라도 영광을 제외하고는 전부 소작인 부담이다. 冬作物은 반면에 전부 소작인 소득이다.

병작법에서 租·種子를 소작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전라도 영암, 경상도 상주군 등 2개군에 나타나며 지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충청도 청주, 전라도

표 5. 제 3지대의 소작 형태

	地 域	決定方法	租·種子	벼질	地 域	決定方法	租·種子	벼질
畓	충청도 옥천	도지법			경상도 함안	병작법	분담	
	경기도 시흥	도지법			경상도 의령	병작법	분담	소작인
	전라도 목포	도지법	소작인	절반	전라도 영암	병작법	소작인	소작인
	전라도 나주	도지법	소작인		경상도 상주	병작법	소작인	소작인
	경상도 용궁	도지법	소작인		경상도 하동	병작법	분담	
	전라도 무안	도지법	소작인		경상도 안동	병작법	분담	소작인
	전라도 장성	도지법	소작인		전라도 무안	병작법	분담	지주
	전라도 순창	도지법	소작인		전라도 나주	병작법	분담	지주
	경상도 인동	도지법	소작인		충청도 청주	병작법	지주	소작인
	전라도 광주	도지법	소작인		전라도 목포	병작법	지주	절반
	전라도 광양	도지법	소작인		전라도 순창	병작법	지주	
	전라도 영광	도지법	분담		전라도 진도	병작법	분담	지주부담자
	경기도 여주	병작법			전라도 진도	정액법	소작인	
	충청도 연기	병작법						
	田	충청도 연기	도지법			경상도 인동	도지법	소작인
전라도 영광		도지법			충청도 연기	병작법		
경기도 여주		도지법			경상도 안동	병작법	소작인	
충청도 옥천		도지법			전라도 목포	병작법	분담	
전라도 무안		도지법	분담		전라도 순창	정액법		
전라도 순창		도지법	소작인		경상도 의령	정액법	小作人	
경상도 용궁		도지법	소작인		충청도 청주	정액법		
전라도 광양		도지법	소작인		경상도 함안	정액법	小作人	

朝鮮 後期 小作 形態의 地域的 差異에 關한 研究

목포, 순창군에서 나타난다. 벧짚 소유에 있어서는 소작인과 지주 소유가 각각 4개군과 2개군에서 나타나며, 전라도 목포의 경우 절반씩 나눈다. 전라도 진도의 경우 지조 부담과 벧짚 소유를 서로 교환한다. 한편 경상도 하동의 경우 맥작에 대한 소작료를 받을 때에는 분담하기로 한 지조를 소작인이 전부 부담한다. 한편 전라도 진도에서는 병작법과 정액법이 동시에 나타난다.

밭의 경우 도지법과 정액법이 대부분이며 병작법은 3개 군에 불과하다. 도지법에 있어서 租·種子는 소작인이 부담한다. 병작법에서는 租·種子를 소작인이 부담하기도 하며(경상도 안동), 전라도 목포에서는 지주가 地租를 부담하면서 벧짚을 전부 가져간다. 소작료는 麥, 豆로 지불하며 1斗落에 대개 1-4斗를 지불한다. 전라도 광주는 1斗落에 木棉 1疋-1.5疋을 납부한다. 광양에서는 夏作만으로 1/3을 지주에게 납부하고 冬作物은 전부 소작인 소득으로 한다. 목포에서는 지주가 地租만을 부담하면서 稻藁, 麥稈을 가져간다.

(4) 제 4지대

제4지대는 강원도의 금화, 삼척 등 7개군, 경기도의 가평, 과천 등 9개군, 경상도의 대구, 신령 등 10개군, 전라도의 고산, 돌산 등 10개군, 충청도의 괴산, 단양 등 25개군, 평안도의 강서군, 함경도의 갑산, 무산 등 4개군, 황해도의 은율, 장연, 재령군 등 총 69개군으로 청도를 중심으로 경기도 및 강원도의 내륙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특용작물과 맥류 및 섬유 작물에 의해 지역화가 주도되며, 미작의 특화도가 가장 낮다.

이 지대에 속하는 군의 소작 형태는 <표 6>과 같다. 답에서 26개군 중 병작법이 17개군으로 매우 우세하다. 병작법인 경우 租·種子를 지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9개군,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5개군이다. 벧짚은 대개 소작인이 가져가며 절반씩 나누는 경우(경기도 과천)와 종자와 교환하여 부담하는 경우(충청도 진천)가 있다. 도지법이 나

표 6. 제 4지대의 소작 형태

	地 域	決定方法	租·種子	벧짚	地 域	決定方法	租·種子	벧짚
畜	충청도 화덕	도지법			충청도 괴산	병작법	지주	소작인
	충청도 괴산	도지법	지주		경기도 지평	병작법	지주	소작인
	충청도 보은	병작법	지주	절반	충청도 충주	병작법	지주	소작인
	충청도 음성	병작법	지주	지주	충청도 온양	병작법	지주	소작인
	충청도 청산	도지법			경기도 과천	병작법	지주	절반
	충청도 영동	도지법			충청도 진천	병작법	지주	절반
	충청도 문의	도지법			경기도 陽平	병작법	지주	
	충청도 충주	도지법			충청도 전의	병작법		
	충청도 청산	병작법		절반	충청도 전의	조지법		
	경상도 대구	병작법	절반		경기도 안성	병작법		
	경상도 의성	병작법	소작인	소작인	경기도 안성	도지법		
	충청도 신창	병작법	절반	소작인	황해도 재령	정액법		
	경기도 용인	병작법	절반	소작인	충청도 천안	정액법		
	충청도 부여	병작법	절반	소작인				
		地 域	決定方法	租·種子		地 域	決定方法	租·種子
田	경기도 지평	병작법	지주		충청도 회덕	도지법		
	충청도 보은	병작법			충청도 영동	도지법		
	경상도 대구	병작법	절반		충청도 문의	도지법		
	경상도 의성	병작법	절반		경기도 용인	도지법		
	충청도 충주	병작법			경기도 안성	도지법		

타나는 괴산군에서는 租·種子를 지주가 부담하는 것이 특이하다. 이 군에서는 복구 공사시 소작인이 무보수 노동을 제공한다. 밭은 병작법과 도지법이 각각 5개군에서 나타나 우세한 유형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병작법에서 租·種자를 지주가 부담하는 경우(경기도 지평)와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경상도 대구, 의성)가 있다. 소작료는 1斗落에 벼나 豆, 粟, 麥으로 지불하며, 충청도 보은의 경우 지주가 입회하여 타작한 후 나누는 방법도 나타난다.

(5) 제5지대

함경도 및 평안도, 황해도 북부와 강원도 내륙 산간지역에 분포하는 제5지대(82개 군)는 豆類, 粟類, 雜穀에 의해 지역화가 주도된다. 이 지대에는 강원도의 금성, 양구 등 10개군, 경기도의 안협, 철원군, 경상도의 울도군, 평안도의 가산, 강계 등 37개군, 함경도의 경성, 경원 등 22개군, 황해도의 곡산, 봉산 등 10개군 등이 속한다. 이 지대에 속한 군의 소작 형태는 <표 7>과 같다. 답에서는 도지법, 병작법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병작법에서는 지주가 租·種자를 부담한다. 이곳에서 벧짚은 지주가 가져가며 소를 소작인에게 빌려주는 경우도 나타난다. 함경도에서는 농작물 대신 화폐로 납부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밭에서는 정액

법이 나타난다. 함경도 길주의 경우 좋은 밭은 一日耕에 三十兩이며, 稿釋도 절반씩 나누고 있다. 북청군에서는 驛土의 소작료로 一日耕에 7-10兩씩 지불한다.

4. 종합분석

이상 각 지대의 소작 형태를 보았을 때 畓에서의 소작은 소작료 결정방법, 租·種자의 부담 주체, 부산물인 벧짚의 소유 등 세가지 요소가 결합되면서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세 요소 중 租·種子 부담과 벧짚 소유와의 관계는 <표 8>에 나타난다.

두 변수간에 유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지만 租·種자를 절반씩 혹은 소작인이 부담하는 경우 벧짚을 소작인이 차지하는 곳이 각각 12개군(80.0%), 4개군(66.7%)이다. 반면에 租·種자를 지주가 부담하는 경우 벧짚을 소작인이 가져가는 곳이 6개군(35.2%)에 불과하고 지주가 갖는 경우가 5개군(29.4%)으로, 대체로 벧짚 소유와 租·種子 부담이 서로 교환되면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작료 결정방법과 지조 종자 부담 방법 및 벧짚 소유자와의 관계는 <표 9>와 같다. 도지법이 나타나는 17개군 중 14개군(82.4%)에서 租·種

표 7. 제 5지대의 소작 형태

	地 域	決定方法	租·種子	벧짚	地 域	決定方法	租·種子	벧짚
畓	함경도 원산	도지법			평안도 벽동	병작법	지주	지주
	강원도 이천	병작법			함경도 길주	병작법		
田	地 域	決定方法	租·種子		地 域	決定方法	租·種子	
	함경도 길주	정액법			함경도 북청	정액법		

표 8. 租·種子 부담 유형별 벧짚 소유

租·種子	벧짚	소작인	절반씩 나눔	지주	계
	지주 부담		6(35.2)	6(35.2)	5(29.4)
절반씩 부담		12(80.0)	1(6.7)	2(6.7)	15(100.0)
소작인 부담		4(66.7)	1(16.7)	1(16.7)	6(100.0)

Chi-Square=8.26 Df=4 Sig>=0.05

朝鮮 後期 小作 形態의 地域的 差異에 關한 研究

자를 소작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정액법에서는 전부 소작인이 부담한다. 병작법에서는 지주가 부담하는 경우,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각각 19개(39.6%), 25개군(52.0%)이며, 소작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4개군(경상도 마산, 의성, 상주, 전라도 영암군)에서 나타난다. 병작법에 租·種子까지 부담함으로써 경작권이 약화된 이들 지역은 앞의 이모작 비율이 높은 지역과 대체로 일치한다.

앞 장에서 분석한 각 농업지대에서 위 3개 유형이 분포하는 군의 빈도는 <표 10>과 같다. 각 지대에서 높게 나타나는 소작 형태를 보면 제1지대는 도지법이, 제2지대는 병작법 II유형이 제3지대는 도지법이, 제4지대는 병작법 I유형이 가장 높고, 제5지대에는 뚜렷한 특징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지법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1, 3지대의 공통적인 특징

표 9. 소작료 결정방법 유형별 租·種子 부담

소작방법 \ 부담자	소작인	분담	지주	계
도지법	14(84.2)	2(11.8)	1(5.9)	17(100.0)
병작법	4(8.3)	25(52.0)	19(36.6)	48(100.0)
정액법	3(100.0)	-	-	3(100.0)

Chi-Square=39.28362 Df=4 Significance=0.0000

이상 <표 9>에서 소작료 결정 방법과 租·種子 부담 주체간의 관계를 보았을 때 조선 후기의 소작 형태는 다음 3개 유형으로 분화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 ① 도지법으로 租·種子を 소작인 부담하는 유형(26개군)
- ② 병작법으로 租·種子是 지주가 부담하는 유형(19개군)
- ③ 병작법으로 租·種子を 절반씩 부담하는 유형(25개군)

은 미작의 비율이 다른 지대보다 높으며 특히 제3지대의 경우 이모작의 비율도 높은 지역이다. 지주가 租·種子を 부담함으로써 사실상 1/3의 실질 지대를 나타내는 병작법 I유형이 나타나는 제4지대는 미작의 비율이 낮고 맥작과 섬유 및 특용작물이 특화된 충청도 내륙지역이다. 한편 세 유형 중 소유권이 가장 발달한 것으로 여겨지는 병작법 II유형이 높은 비율을 보이는 지역은 맥작과 두류가 특화된 제2지대이다.

이상과 같이, 각 농업지대와 소작 형태와의 관

표 10. 농업지대별 소작료 결정방법

구 분	도지법	병작법 I	병작법 II	기 타	계
제1지대	8(30.7)	5(26.3)	7(28.0)	1(5.0)	21(23.3)
제2지대	0(0.0)	1(5.2)	7(28.0)	4(20.0)	12(13.3)
제3지대	11(42.3)	3(15.8)	7(28.0)	6(30.0)	27(30.0)
제4지대	6(23.1)	9(47.3)	4(16.0)	7(35.0)	26(28.8)
제5지대	1(3.9)	1(5.2)	0(0.0)	2(10.0)	4(4.4)
계	26(100.0)	19(100.0)	25(100.0)	20(100.0)	90(100.0)

Chi-Square=22.318 DF=12 Sig=0.0341

- 1) 병작법 I : 병작법으로 租·種子是 지주가 부담
- 2) 병작법 II : 병작법으로 租·種子を 절반씩 부담
- 3) 기타: 정액, 병작법 중 租·種子 소작인 부담, 도지법 중 租·種子 분담 혹은, 지주 부담

계를 분석한 결과를 볼 때, 농업형태의 지역간 분화는 이모작과 경지확장, 수전비율 및 재배 작물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미작의 특화가 높으나 맥작의 재배 비율이 낮은 제1지대는 경지확장에, 맥류와 두류의 특화가 높으나 미작의 특화가 낮은 제2지대는 발작물에 의하여, 미작과 맥류의 특화도가 높은 제3지대는 이모작에 의하여, 특용작물과 맥류 등에 의해 주도되는 제4지대와 제5지대는 발작물에 의해 지역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소작의 형태도 각 지역의 토지생산성의 증가와 재배 작물에 의하여 지역간 분화를 유발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소작 형태 중 도지법이 미작 위주의 지역과 함께 이모작이 활발하게 진행된 지역에서 분포하고 있으며, 병작법이 맥류가 특화되는 지역에 주로 분포함이 이를 보여준다.

병작법이 주로 나타나는 지역이 도지법이 분포하는 1, 3지대에 비해 맥류의 특화도가 높고 미작이 낮은 것은, 맥류가 夏麥作과 논에서 畚裏作으로 재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지역에서 미작의 특화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답에 대한 소작권 경쟁이 1, 3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하였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租·種子를 절반씩 분담하는 병작법 II 유형이 나타나는 2지대의 경우 미작의 특화 순위는 맥작에 비해 더욱 낮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볼 때 조선 후기의 토지소유권의 강화는 토지 생산성 향상과는 깊은 관계가 없이 진행되었고, 반면에 답면적에 대한 소작경쟁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도 명목적으로는 畚에서 지대가 인상되었으나 실제로는 冬麥作을 소작인 소유로 함으로서 실질 지대는 1/3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조선 후기의 소작 형태의 지리적 차이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 소작 형태가 농업지역의 특성과 관련성을 지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당시의 소작 형태는 소작료 결정방법, 租·種子

의 부담 방법, 벼짓 소유, 이모작에서 동맥작의 처리방법 등이 어우러지면서 나타나고 있었다. 소작료 결정방법은 자료상에서는 도지법과, 병작법, 정액법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 중 병작법이 가장 우세하였다. 병작법은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도지법은 충청도 및 전라도 해안지방에 주로 분포하고, 경상도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租·種子 분담 방법에서는 지주가 둘다 부담하는 지역은 경기도와 충청도 내륙지역에 분포하였다. 소작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전라도 해안지역과 경상도 낙동강 유역에, 서로 분담하는 경우는 경상도, 전라도 남부지역 및 충청도 해안지역에 분포한다.

소작 형태의 농업 지역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5개 농업지대에서 각 소작 형태를 분석한 결과, 지역마다 상이한 형태의 소작이 분포하였다. 미작이 특화되어 있는 제1지대는 도지법과 병작법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밭의 경우 도지법이 우세하다. 맥류와 두류가 특화된 제2지대는 논에서는 주로 병작법이, 밭에서는 정액법이 분포한다. 미작과 맥류가 분포하는 제3지대는 도지법과 병작법이 비슷한 비율로 혼재되고 있었으며, 밭에서는 도지법이 많이 나타난다. 맥류와 섬유작물이 특화되어 있는 제4지대는 도지법과 병작법이 비슷하며, 밭에서도 유사한 비율을 보인다.

소작 형태의 구성요소간 관계를 보았을 때 租·種子 부담과 벼짓 소유는 대부분 교환되면서 나타나고 있었다. 소작료 결정방법과 租·種子 부담간의 관련성을 보았을 때 도지법에서는 租·種子를 대부분 소작인이 부담하며, 병작법에서는 租·種子를 지주가 부담하는 경우와 지주, 소작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선 후기의 소작 형태는 크게 ① 도지법(租·種子 소작인 부담), ② 병작법(租·種子 지주 부담) ③ 병작법(租·種子 절반씩 부담) 등 3개 유형으로 나타나고 확인되고 있었다.

5개 농업지대와 위 3가지 소작 유형과의 관련성을 보았을 때 도지법은 미작 위주의 농업지역, 병작법은 맥류의 특화도가 미작보다 높은 지역에서 주로 분포한다. 특히 병작법으로 租·種子를 소작인이 부담함으로써 소유권이 강화된 형태인 소작

형태의 분포는 더욱 그러하다. 병작법 중 租·種子를 소작인이 절반 혹은 전부 부담하는 것을 지주의 소유권이 발달한 형태라고 볼 경우, 본 연구결과에서는 소유권 발달은 이모작의 전개 등 토지생산성의 향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각 지대의 미작과 맥류의 특화 순위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오히려 담비율이 낮은 지역에서 토지의 소유권이 강화된 병작법(租·種子 절반씩 부담)이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지역에서 담에서 소유권이 강화되는 것으로 외형적으로는 나타나나, 실제 이모작의 논에서 생산된 冬作物을 대개가 소작인이 소유함으로써 실질지대는 1/3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조선 후기에 전개된 이모작은 농민들의 경작권의 강화를 가져오면서, 담에 대한 소작인들의 소작권 점유의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지주로서는 실질지대(1/3)를 유지하기 위해 夏作에서 지주의 소유권이 강화되는 소작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이모작은 소유권의 강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주-소작인간의 갈등을 감소시키는 기제로도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담에서 나타나는 소유권이 강화됨으로써, 소작인들의 입장에서는 종전의 수익을 유지시키기 위해 이모작을 촉진시키는 등 집약도를 높여 토지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註

- 1) 소작과 관련된 용어로는 並作, 小作, 時作, 打作, 分作, 어우리, 執作, 定租, 賭地 등 다양하였으며, 각 용어는 시대적인 배경을 달리하며 사용되었다. 이들 용어는 일제 이후 小作으로 정착되어 사용되었다.
- 2) 그 종자와 세미를 북쪽지방에서는 田主가 내고 남쪽 지방에서는 佃夫가 내는데 그 까닭은 타작을 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벧집은 북쪽지방은 田主와 佃夫가 꼭같이 나누는데 남쪽지방에서는 田主가 모두 차지한다. 이때문에 종자와 세미를 위와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흥년으로 굶주리는 해에 벧을 佃夫가 모두 차지하고 종자와 세미를 내지 않으면 田主가 대신 관청의 독촉을 받아 스스로 부세를 납

부한다. 田主가 먼곳에 살면 한말의 벧도 받아내지 못하고서 세미만 바치게 된다. 흥년이 들어 부민들이 많이 파산하는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다.(牧民心書, 戶典, 稅法)

- 3) 한편 삼분법은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경기도 안성의 경우 절반법 또는 삼분법으로 되어 있고, 충청도 강경의 경우 삼분법이 나타나나, 종자는 소작인 부담으로 되어 있어 이를 도지법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 4) 경영형태의 분포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필자의 기존 연구(김기혁, 1991)를 참고 하였음을 밝혀둔다.
- 5) 필자는 입지계수를 이용한 농업지대를 추출하여 이미 발표 한바가 있다(김기혁, 1991). 그러나 분석 결과가 경상도와 전라도 및 충청도 일부지역이 동일한 농업지역으로 결합되어 유형화 되는 등, 소작형태의 지리적인 분포를 밝히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특화도를 순위지수로 변형시켜 지역화를 재 시도하였다.
- 6) 그 중 賭租의 법은 간편하기 때문에 대지주의 소유지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遼隔의 地에 在하는 지주는 거의 이 법에 의하였다. 그리하여 그 分收額은 매년 實地에 가서 상호 협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지주에게 있어서는 <秋收記>라고 칭하는 전년까지의 수확량과 分收額을 기록한 장부를 비치하여 대략 그 양을 알 수 있으므로 이것을 가지고 협의함을 例로 한다(同 資料, 경상도·전라도 편).

文 獻

金基赫, 1991, 韓國 農業地帶의 變化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金基赫, 1994, 日帝時代 韓半島 農業의 地域構造 研究, 釜山地理, 3, 1-18.
 金谷燮, 1970, 朝鮮後期 農業史 研究, 一潮閣.
 慎鏞廈, 1966, 韓國의 地主制度에 關한 研究, 經濟論集, 5(3).
 李佑幸, 1974, 小作慣行에 關한 調查研究, 農業政策研究, 2, 31-67.
 鄭南鎭, 1982, 土地所有權과 土地利用權, 法과 土地, 韓國法學教授研究會編.
 朝鮮總督府, 1904, 韓國土地農產 調查報告.
 朝鮮總督府, 1912,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朝鮮總督府, 1932, 朝鮮ノ小作慣習, 參考編.

吉川祐輝, 1904, 韓國農業經營論.

京都府知事 編, 1907, 韓國農業觀察 復命書.

朝鮮王朝實錄(CD-ROM).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9, 農地改革史研究.

許宗浩, 1965, 朝鮮封建末期의 小作制 研究, 社會科學院 出版社.

Altman, I., 1980, *Culture and Environment*, Brooks/Cole, Publisher.

Bunce, M., 1982, *Rural Settlement in an Urban World*, St. Martin's Press.

A Study on the Regional Variation of Tenancy System in Later Yi-Dynasty in Korea

Kihyuk Kim*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gional variation of tenancy system in later Yi-Dynasty in Korea. Materials for the analysis are acquired through materials(韓國土地農產調查報告), published in 1905 and agricultural census published in 1912. For the identification of difference of tenancy system between agricultural region, regionalization are conducted through by crop combination. Crop combination structure, using rank of LQ index, was clustered into five generic regions through cluster analysis. In these contexts, this study has come to following conclusions.

There are three types of tenancy system in materials: ① Doji(賭地) system of which landrent was 1/3 agricultural products. Tenant beared the land tax and seeds. ② Byoengjak(並作) system of which landrent was 1/2 agricultural products. Landlords beared the land tax and seeds ③ Jeongaek(定額法) system of which landrent was fixed without relation to annual products. But through the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agricultural region and tenancy system, a new tenancy system could be identified : Byeongjak(並作) II system. In this system, landrent was 1/2 of agricultural products, but landlord and tenant shared the landtax and seed in common.

In the distribution of these systems, relationship between tenancy system and agricultural regions could be identified. Doji system was distributed in the regions where rice and double cropping was specialized. But Byoengjak(並作) system was distributed in the regions where upland crops are specialized and ratio of paddy field is comparatively low. Especially new types were emenged where ratio of paddy field was very low.

These show that increase of productivity of land didn't induce the development of the right of ownership in land. The development of ownership was emerged only on the rice paddy fields. Barley cultivated through double-cropping passed into tenant's possessions. So nominal landrent in paddy field seemed to be raised, but actual landrent was maintained about 1/3 of products through double cropping. On the contrary, rights of cultivation is developed through double cropping. As double cropping is developed, competition on paddy field between tenants was intensified. Consequently nominal land rent of paddy fields should be raised.

Key words : tenancy system, agricultural region, landrent, double-cropping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